

라. 직업훈련 시험문제 부분

일부 감호자들이 국가기술자격검증시험문제를 미리 입수하여 유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험문제는 당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개봉, 관리하며 일반사회에서의 시험과 같이 공인된 시험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행하기 때문에 감호소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으며 또한 시험에 입박해서는 예상문제를 골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오해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2. 여자 피보호감호자들의 처우에 대하여

일부 감호자들이 여자 감호자들의 대한 처우가 최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자 감호자의 경우 심성순화를 위하여 각 종교별 교리지도 및 종교상담을 주 4회, 각 종파별(기독교, 불교, 천주교) 종교교회 각 1회씩, 연간 합동집전 2회 및 사회견학 등 다양한 처우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청송제2보호감호소에는 여자 감호자가 40명이 수용되어 있는 바, 2001년의 경우 여자 감호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의욕 고취 및 사회복지 촉진을 위하여 위탁작업(콩선별작업, 위생장갑)을 실시하였으나 생산량이 뒤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처음 위탁작업에 동의를 했던 감호자중 상당수가 작업을 감당치 못하여 해당 작업을 원치 않음에 따라 폐공되었습니다. 여자 감호자의 경우 현재 관용작업(직원식당) 9명, 직업훈련(미용) 6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의료관련사항에 대하여

가. 외부병원진료에 대한 부분

청송제2보호감호소 의무과에서는 의무과장 1인, 공중보건의 1인, 임상병리사 1인, 간호사 2인, 교도관 6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약 800여명의 감호자들의 건강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상 치료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구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감호소 자체에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행형법 제28조 및 제29조에 의거하여 의무관의 판단아래 외부병원으로 이송하여 진료하며 자비진료의 경우 원칙

적으로 의무관의 소견과 관계없이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응급환자의 경우는 즉시 외부병원으로 이송진료를 실시하나, 일반환자는 순번에 의거 1일 3-4명, 월 70-80명을 외부병원으로 이송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피보호감호자들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4호에 의거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 서신검열 및 신체검사 등이 인권침해라는 부분

서신검열 및 신체검사는 행형법 제17조의 2 및 제18조의 2에 따라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므로 감호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청송제2보호감호소에서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5. 귀휴 등 재사회화에 대하여

가. 귀휴에 대한 부분

피보호감호자의 귀휴는 행형법 제44조 및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규칙 제85조, 귀휴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회적응력을 배양하고, 가족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안정된 수용생활을 도모코저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청송제2보호감호소의 경우 2002년도 귀휴계획인원이 30명이었으나 59명(일반귀휴 44명, 주말귀휴 13명, 특별귀휴 2명)으로 피보호감호자의 귀휴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검정고시 및 학사고시에 대한 부분

일부에서 검정고시 및 학사고시의 합격이 가출소 심사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송제2보호감호소 교무과에서는 년3회의 검정고시 합격 및 학사고시 매단계 합격사실을 분류심사과에 통보하여 가출소심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경우 독학사 학위취득

자 1명이 2003. 2월 가출소심사에서 반영되어 출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 재사회화 교육이 전무하다는 부분

피보호감호자의 정신교육은 2주간의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과 심신단련을 도모하여 수용질서 확립 및 출소 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고자 수용자정신교육지침(법무부예규 제581호)에 의거하여 매년 1회 2주간 전 감호자를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건전가요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화교육의 경우 사회복지축진을 위하여 정보화교육담당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02년도 정보화관련 자격증 취득 현황을 보면 정보기기기능사 26명, 워드프로세서 1급 19명, 2급 41명, 3급 5명이 합격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응력 배양 및 지역사회와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2002년의 경우 8회에 걸쳐 15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가족과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심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부만남의 집을 시행하여 2002년의 경우 7회에 7명의 감호자에게 실시하는 등 사회복지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 처우 및 가출소 부분에 대하여

가. 피보호감호자들이 수행자와 처우가 동일하다는 주장에 대한 부분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행자는 수행자분류처우규칙(법무부령 제522호)에 의거하여 처우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피보호감호자는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법무부훈령 제447호)에 의거하여 처우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 처우규정을 보면, 여러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수행자보다는 피보호감호자가 모든 면에서 향상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보호법 제42조를 구체화한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은 집행장소, 계호, 의복, 거실장식, 접견, 서신, 차입물품, 급식, 작업 및 직업훈련, 전화사용, 사회견학, 귀휴요건 등 대부분의 수용처우에서 교도소와는 다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개별적인 처우를 실시하고 있는

바, 수행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나. 가출소에 대한 부분

피보호감호자의 가출소는 사회보호법 제25조에 의거 법무부산하 사회보호위원회에서 집행개시후 매1년에 직권으로 가출소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청송제2보호감호소에서는 매월 의성지청에 가출소 요청심사를 하여 2002년의 경우 월평균 12명을 가출소시켰으며, 2003년 5월 현재까지 월평균 23명을 가출소시키는 등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가출소를 위하여 환경조사, 신원보증, 취업보증서 구비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가출소심사규정 제6조(사회적응관계심사)에 따라 가출소심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원보증서, 취업보증서 구비와 환경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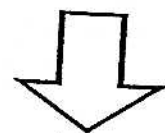
現 況

2003. 5. 16

治 療 監 護 所

法務行政指標

法斗 秩序의 確立



力 點 施 策

- 國家·社會紀綱 確立
- 經濟 再跳躍을 위한 法務 支援 活動 強化
- 人權斗 法律福祉 向上
- 南北統一 對備 法的準備 徹底
- 國民信賴 提高를 위한 法務·檢察의 革新

차 례

I. 一般現況	-----	1
1. 任 務	-----	1
2. 沿 革	-----	1
3. 機 構	-----	1
4. 職 員	-----	2
5. 豫 算	-----	2
6. 施 設	-----	2
II. 收容現況	-----	3
1. 收容人員	-----	3
2. 入·出所人員	-----	3
3. 收容者內譯	-----	4
III. 治療活動	-----	6

I. 一般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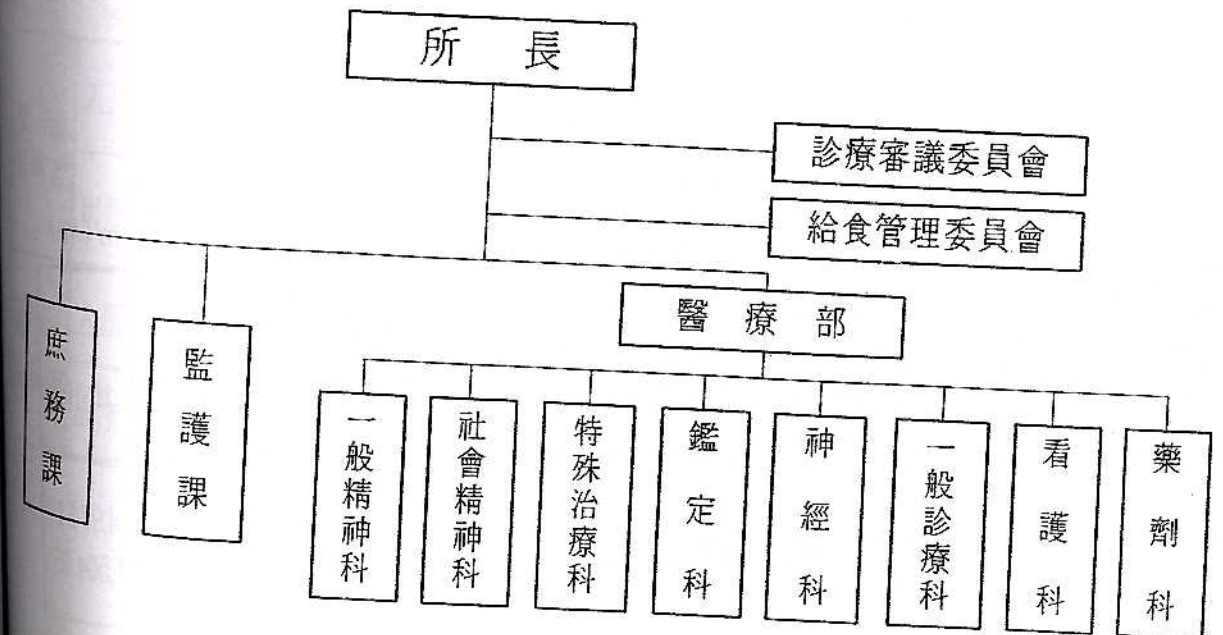
1. 任 務

- 社會保護法 第8條에 依해 治療監護의 宣告를 받은 者를 收容, 保護하고 治療하며 이에 관한 調査·研究
- 法院, 檢察, 警察로부터 依賴받은 者에 대한 精神鑑定

2. 沿 革

年 月 日	內 容	參 考
1987. 8. 14.	治療監護所 職制公布	大統領令 第12232號
1987. 11. 3.	治療監護所 開廳	忠南 公州市 反浦面 鳳谷里
1993. 11. 18.	專攻醫 修鍊病院 指定	1~4年次 5名 修練 中
1995. 10. 15.	500病床 增築病棟 完工	'92. 12. 31. 着工
1996. 4. 16.	增築病棟 開設	藥物中毒治療室 運營
1997. 11. 10.	病院名稱 並行使用 「國立監護精神病院」	法務部訓令 第385號

3. 機 構



4. 職員

職列 區分	計	別定職	股 職									計
			少年保護	醫務	業務	看護	保健	建築	食品衛生	電氣	警務技術	
定員	301	11	22	13	3	74	4	1	1	1	6	165
現員	296	11	22	8	3	74	4	1	1	1	6	165
缺員	5	0	0	5	0	0	0	0	0	0	0	0

※定員外：10名(專攻醫5名, 公衆保健醫5名)勤務中

5. 豫算

單位：百萬圓

計	人件費	基本事業費	主要事業費
12,318	10,010	2,107	201

6. 施設

單位：㎡(坪)

計	土 地			建 物						
	構内	構外		計	事務室 (28室)	病棟 (4棟334室)	寄宿舍 (3棟93室)	家族館 (1棟3室)	非常待機所 (4棟69床)	其他
	林野	道路等								
309,520 (93,629.37)	152,143 (46,023.05)	137,060 (41,460.46)	20,317 (6,145.86)	45,851.62 (13,870.02)	10,110.28 (3,058.34)	22,468.89 (6,796.8)	3,611.32 (1,092.41)	232.00 (70.18)	4,455.03 (1,347.64)	4,974.1 (1,504.65)

II. 收容現況

1. 收容人員

定員	現 員				收容密度 (坪當)	參 考
	計	被治療 監護者	鑑 定 留置者	監 護 委託		
1,000	810 (112)	783 (112)	22 (0)	5 (0)	0.57名	・實收容 坪數 ：1,452坪 ・1日平均 收容人員 ：801名

※ ()은 女子임.

2. 年度別 入・出所人員

區分	年度別 計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被治療 監護者	入所	3,237	146	376	107	107	113	150	140	175	174	158	203	215	225	252	291
	出所	2,439	1	50	69	113	102	54	110	145	139	241	181	133	256	214	244	279	108
鑑 定 留置者	入所	3,210		20	48	67	72	110	177	180	213	254	281	308	404	404	309	263	100
	出所	3,188		18	48	64	65	113	170	185	203	241	289	303	402	403	324	265	95

※ 監護委託(青松保護監護所) : 入所 100名, 出所 95名

3. 收容者 內譯

○ 罪名別

區分 性別	計	殺人	暴力	暴行	竊盜	放火	強盜	強姦	麻藥	其他
計	783名 (100%)	288 (36.8)	131 (16.7)	58 (7.4)	74 (9.5)	45 (5.8)	24 (3.0)	41 (5.2)	91 (11.6)	31 (4.0)
男	671	231	119	49	61	37	22	41	86	25
女	112	57	12	9	13	8	2	0	5	6

○ 病名別

區分 性別	計	精神分裂	性格 障礙	精神 遲滯	癲癇	妄想 障礙	躁鬱症	알콜	藥物類		其他
									麻藥	其他	
計	783名 (100%)	431 (55.0)	9 (1.2)	42 (5.4)	17 (2.2)	41 (5.2)	79 (10.1)	30 (3.8)	26 (3.3)	63 (8.1)	45 (5.7)
男	671	375	7	38	17	34	53	30	22	62	33
女	112	56	2	4	0	7	26	0	4	1	12

○ 年齡別

區分 性別	計	20歲未滿	20-29歲	30-39歲	40-49歲	50-59歲	60歲以上
計	783名 (100%)	2 (0.3)	130 (16.6)	329 (42.0)	225 (28.7)	77 (9.8)	20 (2.6)
男	671	2	114	282	195	60	18
女	112	0	16	47	30	17	2

○ 學歷別

區分 性別	計	無學	初卒	中卒	高卒	大卒
計	783名 (100%)	29 (3.7)	133 (17.0)	160 (20.4)	348 (44.5)	113 (14.4)
男	671	24	102	136	307	102
女	112	5	31	24	41	11

○ 執行期間別

區分 年別	計	1年未滿	1年以上 2年未滿	2年以上 3年未滿	3年以上 4年未滿	4年以上 5年未滿	5年以上 10年未滿	10年 以上
計	783名 (100%)	253 (32.3)	165 (21.1)	108 (13.8)	83 (10.6)	53 (6.8)	85 (10.8)	36 (4.6)
男	671	218	135	90	72	45	76	35
女	112	35	30	18	11	8	9	1

○ 前科別

區分 性別	計	初犯	2犯	3犯	4犯	5犯以上
計	783名 (100%)	512 (65.4)	101 (12.9)	46 (5.9)	32 (4.1)	92 (11.7)
男	671	420	94	42	30	85
女	112	92	7	4	2	7

Ⅲ. 治 療 活 動

1. 分 類 審 查

- 入所 後 1個月間 檢査病棟(男) 및 女子病棟(11, 12病棟)에 收容
- 各種 檢査(神經機能, 放射線, 臨床心理, 臨床病理 等)로 身體, 精神狀態 診斷
- 症狀에 따른 治療指針 提示 및 擔當主治醫 指定

2. 分 類 收 容

- 重患者 病棟 (檢査病棟)
-重患者 및 新入 被治療監護者 · 鑑定留置者(男)
- 女 子 病 棟 (11, 12病棟) : 女子 被治療監護者 및 鑑定留置者
- 藥物中毒再活센터 : 麻藥類 및 藥物濫用者
- 其他 9個病棟

3. 精神科的 治療

- 擔當主治醫 指定
- 症狀에 따른 治療方法 決定
- 擔當醫師의 治療計劃에 따른 精神療法, 藥物療法, 環境療法 等 實施

4. 特殊治療 活動

- 小 集 團 治 療
기타, 보컬관악, 지점토, 등공예, 合唱, 手織染色, 陶磁器工藝, 日常生活療法, 사이코드라마, 美術, 舞蹈, 體育, 레크레이션, 銀行놀이 등
- 大 集 團 治 療
舞蹈發表會, 合唱大會, 體育大會, 寫生大會, 歌謠際, 演劇祭, 映畫上映 放送을 통한 音樂治療

5. 醫療再活治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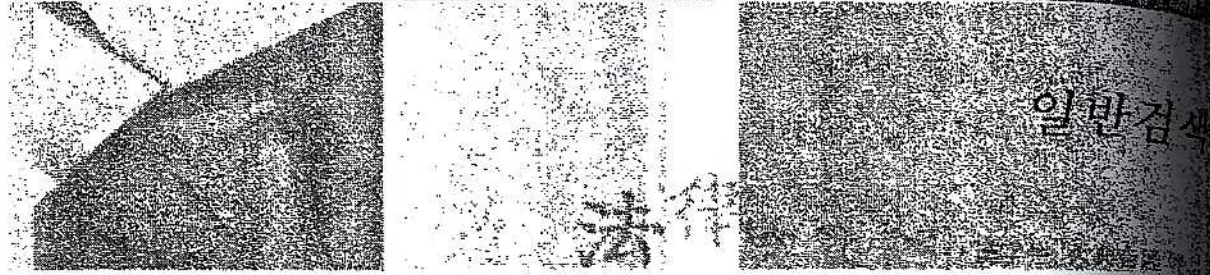
社會技術訓練, 精神健康教育, 斷酒教育

6. 職業能力開發訓練 實施

- 訓練對象 : 症狀이 良好하고 職業再活訓練이 必要한 者
- 訓練種目 : 5個工科 (컴퓨터, 建築塗裝, 塗襪, 租積, 타일)

7. 外來診療制 運用 內實化

- 目 的 : 出所者의 精神疾患再發 및 再犯防止
- 對 象 : 治療監護終了者 中 希望者
- 期 間 : 出所 後 5年 (1次에 한하여 延長 可)



검색결과

검색어 [서명/키워드: 치료감호]

유형별 [전체]

번호	서명/기사명	저자명	출판사항	유형
1	治療監護(現住建造物放火)被害事件	金相昊	東亞法學.11.1990.67-96	연속간행물
2	治療監護의 執行	金相昊	矯正.187.199..25-51	연속간행물
3	治療監護制度에 관한 研究	金相昊	東亞法學.8.1989.53-168	연속간행물
4	治療監護處分에 있어서 危險性	金相昊	東亞法學.4.1987.45-68	연속간행물
5	治療監護處分에 있어서의 危險性	金相昊	石隅 黃山德박사추모논문집 [법철학과 형법의 제문제]..1989.571-594	연속간행물
6	刑事責任無能力과 精神一障礙者의 治療監護에 관한 研究一	李吉浩	동아대.법학석사.1986	학위논문
7	治療監護制度에 관한 研究	金相昊	경남대.법학박사.1989	학위논문
8	치료감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編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4.115p	단행본
9	범법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문제에 관한 연구-공주 치료감호소 퇴소환자를 중심으로	安明淑	승실대.문학석사.1997	학위논문
10	정신감정과 치료감호자료집	김종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6.142p	단행본

[1][2]

🔍 검색 🔍 출력 📄 상세화면 🗑️ 검색화면



검색결과

검색어 [서명/키워드: 치료감호]

유형별 [전체]

번호	서명/기사명	저자명	출판사항	유형
11	한국에서의 범법정신질환의 현황에 대한 연구-법무부 치료감호소의 11년간의 통계적 고찰	최상섭·강순기	大韓法醫學會 誌.22.2.1998.32-46	연속간행물
12	審級制度에 따른 治療監護와 獨立請求(判例評釋-大判 1999.8.24. 99도1194)	李承寧	刑事裁判의 諸問題.3.2000.408-430	판례
13	형법상 치료감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송문호	刑事政策.12.1.2000.5-22	연속간행물

[1][2]

🔍 검색 🔍 출력 📄 상세화면 🗑️ 검색화면

(1)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Library

법학도서관 |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Material Index

법학도서관 |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법학도서관 |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검색결과

검색어 [서울대학교: 정신장애]

검색범 [전체]

번호	검색어	저자명	출판사명	출판연월	페이지	문헌종류
1	정신장애와 범죄	정수영	법률사상	1991.03	1-112	인쇄간행물
2	정신보건법-정신장애자의 권리증진이나 권리수용이냐-	박은정	법과 사회	1992.08-75	75	인쇄간행물
3	정신장애자 보호에 관한 소고	김희재	법학조사월보	1991.05-76	76	인쇄간행물
4	정신장애자 처우에 관한 연구-일본정신보건법과 우리나라법안을 중심으로-	박종규	양남대.법학석사	1991		학위논문
5	정신장애자의 범죄성에 관한 연구	정종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56p		단행본
6	각국 정신보건법에 있는 정신장애자 강제입원	김영후	정신건강연구(漢陽大)	1995.41-67		인쇄간행물
7	정신장애자의 책임능력과 인신구속의 관계에 대한 법률적 이해	노영우	정신건강연구(漢陽大)	1995.13-40		인쇄간행물
8	정신장애자의 인권보장-정신장애자의 인권보장과 보호의 관점에서	박희정	日藏下在玉博士論中記念論文集(現代公法論)	1994.711-730		인쇄간행물
9	정신장애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연구-일본정신장애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연구-일본정신장애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연구-	박희정	정신장애(서울대)	1994.156-165		인쇄간행물
10	정신장애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연구-일본정신장애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연구-	박희정	정신장애(서울대)	1994.156-165		인쇄간행물
11	정신장애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연구-일본정신장애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연구-	박희정	정신장애(서울대)	1994.156-165		인쇄간행물
12	정신장애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연구-일본정신장애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연구-	박희정	정신장애(서울대)	1994.156-165		인쇄간행물
13	정신장애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연구-일본정신장애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연구-	박희정	정신장애(서울대)	1994.156-165		인쇄간행물

<보 도 자 료>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서번호 : 03-0521-01

수신 : 각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신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목 :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초대

날짜 : 2003년 5월 21일

1. 언제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각 언론사들과 시민사회 종교인권단체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청송보호감호소는 이 시대의 가장 소외 받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그 문제점은 지난 20여 년간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3. 청송보호감호소의 피보호감호자들이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출소자들이 실상을 알리면서 불이 붙기 시작한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에 여러분의 힘과 지해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4. 이에 그 문제점과 현상을 짚어보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오셔서 고견도 들려주시고 사회에 이 문제를 알려내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2003년 5월 22일 (목) 오후 3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2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목: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 제1부 15:00-15:30 : 여는 말씀 - 최병모 민변회장,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 공동대표
비디오 상영 - 인권의 무덤 [청송보호감호소]
청송 취재기 - 채환규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책임 프로듀서

■ 제2부 15:40-18:00 발제 및 토론

* 사회 :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 발제 : 1. 보호감호제도의 실태와 그 대안

유해정 (인권운동사랑방 상임 활동가)

2. 사회보호법의 위헌성과 반인권성

박찬운 (변호사, 사회보호법폐지 공대위 집행위원장)

3. 외국의 보호감호제도

한영수 (경원대학교 법대 교수)

* 토론 : 김동한 (사회보호법폐지 공대위 자문위원, 법과인권연구소 소장)

김해정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호중 (한국의외국어대 법대 교수)

* 질의응답

* 참여단체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다산
인권운동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엠네스티 한국지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
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노조이주지부, 평등사회를 위
한 민중의료연합 (총 26개 민간단체)

* 고문

고은 시인, 유현석 변호사, 조준희 변호사, 홍성우 변호사

* 공동대표

최영도 (참여연대 공동대표),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용수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장), 조순덕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자문위원회

김동한 교수, 김형태 변호사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요지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위하여

이호중(외대 법대 교수)

1. 보호감호라는 제도 자체가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 다수의견으로 - 보호감호처분이 형벌과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호감
호처분은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보호를 위해 헌법 제12조 제1항을 근거로 한 보안처분으로
그 본질과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에 있어 형벌과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과 보호감호를 병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헌재 1996. 11. 28,
95헌마20 등).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논리는 보호감호의 실질적인 기능과 집행현실을 의
면한 지극히 형식적인 논리이다. 현재의 이러한 결정이 과연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지니는 헌법
이념, 즉 국가형벌권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에 충실한 것인
가에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보호감호는 헌법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첫째, 사회보호법 제1조는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보호법의 목적은 행형의 목적과도 같은 것이다.
행형법 제1조는 - 사회보호법 제1조처럼 - 범죄자의 격리(즉 사회보호)와 사회복귀를 행형의 목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벌은 책임을 근거로 하여 부과되지만, 징역과 같은 구금형의 “실질적인
지향점”은 범죄자의 사회복귀이다. 이 점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명제이다. 그렇기에 형벌
의 이름이건 보호감호의 이름이건 범죄자를 일정기간 동안 구금하면서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도모
한다는 점에서는 양자는 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헌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그 명칭이 형벌이건 보안처분이건 간에 동
일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
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보호감호는 보안처분이고 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다르다”는 식의 형식
논리에 집착하면, 국가의 교묘한 형벌전략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없다. 헌법규정은 단순하다. 그렇기에 헌법규범의 해석은 문리해석이 치우치기
보다는 그 헌법규범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던가를 성찰하면서 헌법이념에 충실한 해
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헌법은 살아있는 규범이 아니다. 형식적인 개념법학의 설부른
논리가 헌법을 죽이고 있다.

둘째, 현재의 다수의견은 책임을 기초로 하는 형벌과는 달리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을 기초
로 부과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과 보호감호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20세기 초 보호감호
를 비롯한 보안처분제도를 고안해 낸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의 형법이론은 분명 그와 같은 관점
에 입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국가가 형벌과 별개의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법학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호감호처분을 정당화하는 근
거인 “재범의 위험성”을 누가, 무슨 근거에서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다. 국가는 시민 개개인에 대하여 그가 장래에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는 예측을 무슨 근거에
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불확실한 예측에 근거를 두고 형벌권의 발동을 인정한다면 이것 만큼
위험한 발상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설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한들, 국가가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혹은 감소)한다는
미명 하에 과연 시민을 구금하여 개조시킬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다수의 학자들이 의문을 제

기하고 있다. 국가가 시민을 개조하겠다는 발상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매우 위험하다.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 시민일지라도 그의 심성을 개조하여 소위 '착한 시민'을 만들어 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근대국가의 헌법은 국가에게 시민을 개조하라는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재범의 위험성은 보호감호라는 이름으로 부과되는 자유의 속박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

셋째, 범죄자를 개조하겠다는 교정정책이 실패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교정교화는 범죄자의 진정한 반성에 기초할 때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반성은 강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범죄자의 책임의 범위 내에서 형벌을 부과할 수는 있다. 형벌로서 구금하는 동안 국가는 범죄자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직업훈련, 학교교육 등).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가가 개인의 심성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는 실패한, 학교교육 등).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가가 개인의 심성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는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가 범죄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오로지 형벌이 부과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보호감호의 집행실태는 헌법의 이념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백번 양보하여 보호감호가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치자. 그러면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집행되는 보호감호의 실질은 과연 범죄자의 사회복귀라는 이념에 부합하는가? 이에 대해서도 심각한 반론이 제기된다.

첫째, 현재 보호감호의 집행은 행형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의복이나 작업상여금, 점선, 교육프로그램 등에서 일반 수형자와는 다른 면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호감호의 집행실태는 교도소의 집행실태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더 열악하다. 오늘날 사회복지행행의 목적이라고 할 때, 범죄자가 사회적 유대관계를 지속하도록 해 주는 것(외부통근작업, 가족과의 유대 등)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은 행형학·교정학·형사정책학계의 주지의 사실이다. 일단 청송보호감호소는 지리적으로 너무나 오지에 위치해 있다. 그레가지고서는 범죄자에게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게 해 줄 수 없다. 사회적 유대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청송보호감호소는 오히려 범죄자의 사회적 유대를 단절시켜버린다. 그리고 직업훈련이나 작업상여금제도와 같은 교정프로그램의 측면에서 볼 때, 또 점선·서신과 같은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보호감호는 교도소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에 있음은 이미 많은 출소자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요컨대 현재의 보호감호의 집행실태는 한 마디로 범죄자의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나는 헌법재판소가 보호감호의 집행실태를 인권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시각을 갖추기를 바란다. 2.6평의 공간에 4-6명의 인원이 함께 생활하는 것, 1평도 채 되지 않는 정벌방, 화장실 등의 시설이 전혀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수치심을 주는 것, 끊이지 않고 문체되는 교도관의 가혹행위들, 열악한 교정프로그램, 거의 바깥세상과 단절된 오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등등, 그러한 보호감호의 제반 조건들은 이미 그 자체로 감호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구조가 아닌가?

3. 보호감호를 폐지하면 과연 그 범죄자들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인가? 답은 "전혀 아니다"이다.

보호감호를 폐지하고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들을 일시에 석방하면 그들로 인하여 커다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다분히 과장된 것이다.

첫째, 미국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사례를 들겠다. 1960년대 중반 미국 연방대법원의 기드온 판결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그 판결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상

대에서 자백 등의 진술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없다는 판결이었는데, 이 판결로 인하여 플로리다주의 경우 수형자의 약 1/3이 석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정부관계자와 일반시민들 사이에는 범죄자들이 일시에 석방됨으로 인하여 범죄가 심각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형사정책 학자들에게도 과연 교도소구금이 범죄예방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훌륭한 연구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후에 밝혀진 바로는, 그 대규모 석방 이후 범죄율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다분히 심리적이고 언론이 조장한 측면이 많았던 것이다.

둘째, 우리 사회는 불행히도 수많은 범죄자들이 경찰에 검거되지 않은 채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된 자의 약 80%가 절도범들이라 한다. 절도범죄를 예로 들어 보겠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절도범죄의 경우 신고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주거침입절도의 경우 신고율 40.3%, 대인절도의 경우 신고율 11.3%).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절도범죄의 약 80~90% 정도는 검거되지 않은 채로 생활하고 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검거되지 않은 채로 아마도 재범, 삼범을 저지르고 있을 것이다. 청송보호감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범죄자는 전체 범죄자의 극히 미미한 일부일 뿐이다.

셋째, 무엇보다 우리는 보호감호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구금이 범죄자로부터 사회적 유대를 완전히 단절시켜 버림으로써 그들이 정작 사회에 나왔을 때 전혀 적용할 수 없게끔 만든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송보호감호소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다. 사회로부터 격리된 공간에서 사회적응훈련을 한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보호감호는 그나마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예전 직장, 가족, 친구관계 등)를 범죄자로부터 완전히 빼앗아 버린다. 요컨대, 재범의 우려가 높아 구금하였고 그래서 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자들의 재범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보호감호소의 구금 자체가 범죄자의 사회적 유대를 말소시킴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오히려 더 증대시킨다는 점이다.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은 형벌로써 족하다.

4. 결론 : 인권보장에는 타협이나 절충이 있을 수 없다

보호감호는 사실상의 이중처벌이다. 그리고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집행되는 보호감호의 실상은 총체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보호감호의 실상을 애써 외면하지 않는다면 보호감호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범죄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하는가? 그렇지 않다. 설사 범죄증가의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매우 미미할 것이며, 전혀 심각한 수준이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인권보장에는 타협이 없다. 온갖가지 걱정에 휩싸여 있다면 우리는 인권선진국의 대열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우 427-720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화(02)503-7066 /전송 (02)503-7068
 보호과 과장 김현정 검사 이용주 사무관 류남진 담당자 이한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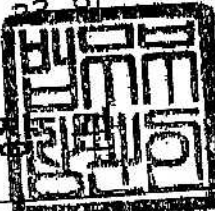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보호 61307-512
 수신 유해정(인권운동사랑방) 귀하

접수일자	2003. 5. 6.	접수번호	32
청구정보내용	2003년 현재, 1. 피보호감호자의 출소 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및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후 재범율(죄명별 분류) 2. 피보호감호자의 재범율 및 죄명별 분류 3. 피보호감호 출소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사회연계 프로그램 여부 - 기관 및 내용, 예산 등		
공개내용	별첨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사유	1. 피보호감호자의 출소 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및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후 재범율(죄명별 분류)은 현재 파악되어 있는 통계가 없어 공개 불가 2. 피보호감호자의 재범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의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의 곤란을 초래할 정보로 사료되어 비공개		
공개방법	직접공개		
	간접공개	공개내용회신	
공개일시	공개장소		
수수료	우편요금	수수료감면액	계
	원	원	원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03년 5월 22일

법무부 

(첨부)

공개내용

2. 피보호감호자의 죄명별 분류

- 2002년 12월 31일 현재 감호집행중인 피보호감호자 1,675명 중 강도 255명, 절도 1,243명, 폭력 99명, 사기 50명, 기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치상, 강간치사,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약취·유인 등) 28명으로 분류됨

3. 피보호감호 출소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사회연계 프로그램 여부

- (기관 및 내용, 예산 등)
- 기관 : 한국更生보호공단, 사단법인 담안선교회
 - 한국更生보호공단

한국更生보호공단은 1995. 6. 1. 설립되어 2003년 현재 전국에 12개 지부, 5개 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촉진과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립更生을 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자립지원과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음 (2003년도 국고보조금 : 51억 8,100만원 책정)
 - 사단법인 담안선교회

서울 중랑구 면목동 639-12 소재, 담안재활원을 운영하여 토너·카트리지 재생업을 하면서 피보호감호 출소자들을 취업시켜 사회복귀를 촉진시킴과 아울러 선교회 생활관에서 출소자 숙식제공, 취업알선 등을 해 주고 있음 (2003년도 국고보조금 : 1억 700만원 책정)

그대는 보이는가, 그대는 들리는가, 반인권의 상징, 청송의 실태 그리고 저 처절한 외침을

눈을 가리지 말고 볼지어다. 귀를 막지 말고 들을지어다. 지금 저 청송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의 실태와 그 속에서 외치는 그들의 외마디 비명을.

5월 23일을 기하여 또 다시 청송보호감호소의 피감호자들이 단식을 선언하였다. 우선은 감호소가 주는 판식을 거부한다고 한다. 그리고 며칠 뒤 개인적으로 준비한 사식이 고갈되면 완전한 단식으로 돌입한다는 것이다. 작년 세 차례에 걸친 단식투쟁이 아직도 우리들의 기억에 생생한데 왜 이들은 이 같은 극한적인 투쟁을 또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번 단식투쟁의 직접적 원인은 작년 단식투쟁 과정에서 법무부가 이들에게 약속한 가출소의 확대를 비롯한 처우개선 약속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는 사회보호법의 존재, 곧 보호감호제도 그 자체에 있다는 데 이론의 여지는 없다. 이들은 지금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위해 다시 한번 죽음을 무릅쓴 처절한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안다. 청송의 보호감호제도는 지난 80년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한 다음 폭력배일소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끌고 가 살육한 삼청교육대의 후신이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반인권제도임.

우리는 안다. 이 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형벌을 다 마친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격리시켜 이들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보호감호소를 출소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 뿐이라는 것을. 가진 것 없고 갈 데 없는 이들, 보호관찰이라는 감시망 속에서 그들이 이 사회에 정착을 한다는 것, 그것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너무나 늦었다. 지난 23년간 우리의 양심은 잠을 자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제도를 두고 인권을 이야기 하였는가. 어떻게 이런 이들을 두고 사회의 통합을 이야기 하였는가. 슬프고 슬프다. 양심수들은 그래도 변호사들도, 인권운동가들도 이웃이 되어 그들을 위해 한 목소리로 외쳐 주었건만 잡범으로 이루어진 이들 피감호자들에게는 변호사들도, 인권운동가들도 외면하였다. 물론 언론도 외면하였다. 범죄인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그 명분 하나로 수천의 인간이 말살되어 왔는데도 우리는 천연덕스럽게 아직도 사회보호 운운하며 이들을 멸시하고 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청송의 외마디 비명을 듣자, 그 인간 말종의 현장을 보자. 이 나라의 인권발전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청송의 보호감호시설을 없애자, 그리고 다시는 사회보호라는 이름 하에 자행되는 이중처벌을 용납하지 말자. 청송이 있다고 하여 이 나라의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청송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줄 때 진정 사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해진다는 그 자명한 진리를 이제 우리 몸으로 깨닫자.

이에 이 나라의 대표적인 인권단체로 구성된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

위)'는 금번 청송보호감호소의 단식사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사회보호법 하에서의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보호감호제도의 폐지 이전이라도 피감호자들의 처절한 요구인 가출소의 대폭확대, 근로보상금의 인상 등을 포함한 처우대책을 즉각적으로 실시하라.

셋째, 국회는 청송보호감호소와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라.

넷째, 헌법재판소는 그동안의 합헌결정에 중지부를 쫓고 피감호자들의 기본권의 침해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2003. 5. 24.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서번호 : 03-05-26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발신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청송 2감호소 단식농성 4일째

제목 : - 출소자 1인 청와대 앞 시위 돌입
- 공대위 청송단식농성 유감 성명발표

날짜 : 2003년 5월 26일

문의 : 유해정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019-307-4418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3/ 016-706-8105

1.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03년 3월 11일 22개의 시민·인권 단체들이 모여 사회보호법의 반인권성과 위헌성을 알려내기 위해 만든 연대기구로, 현재 총 26개 단체가 함께 '사회보호법 폐지'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지난 23일 낮 12시부터 청송 제2보호감호소 피보호감호자들 약 300여명이 '사회보호법 폐지'와 '단계적인 가출소 확대'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단식 4일째인 오늘 26일 오전 10시 현재 전체 감호자 700여명 중 500여명이 4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와대 앞에서 청송제2감호소 출소자 김아무개씨가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김씨는 지난 5월 2일 출소한 이래 일산에 있는 한 시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한편 공대위는 오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청송감호자들의 단식농성과 관련한 유감성명을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5. 이에 많은 언론사에서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다산인권운동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 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엠네스티 한국지부,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교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평등노조이주지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http://antiprison.org/antiboho/>)

청구이유 보충서

사건 2003 헌마 53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확인
청구인 김 0 0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이유 및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청구의 개관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의 개요는,

청구인의 '2002. 10. 16.경 면담요청 시에 발생한 공장건물 2층 계단 입구에서 면담을 하였던 바 개인신상에 관한 면담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수치심을 느끼게 한 일'과 '2002. 12. 13.경 징벌형의자에 대한 조사실 수용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채, 조사실이 아닌 관구실과 공장 내에서 자술서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근거로 조사 수용시킨 일'로 항의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제반 규정을 정하지 않았는 바,
이는 보호감호소의 경우 운영실태가 교도소와 비교하여 다른 것이 없으며, 특히 가출소를 명목으로 교도소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더라도 피보호감호자들이 이를 참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은 피보호감호자들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은 채, 동법 제42조(다른 법률의 준용)에 단지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으로 인한 것이며,

동 조항은 그 규정의 포괄적인 준용규정이나 애매하고도 모호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청구인과 같은 법의 피적용자인 피보호감호자들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청원권, 자유권적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 심판 대상인 법률 조항

제42조 【다른 법률의 준용】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6.12.12>

2. 문제가 된 사안의 경과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10. 10.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가법(절도) 등으로 징역 1년6월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아 현재 청송 제2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2002. 10. 16.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으로 면담신청 보고전을 제출하였는데, 2002. 11. 21.자로 공장건물 2층 계단 입구에서 면담을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면담 방법이 적법한가의 해명을 듣고자 하였지만 공장근무자는 계호근무준칙(1993. 11. 26. 법무부 훈령 제293호) 제134조 출원사항의 처리에 따라야 한다면서 면담을 거절하였고, 계속 항의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집단폭행을 가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2002. 12. 13.경에는 공장담당근무자가 조사업무는 조사를 담당하는 교도관이 별도로 설치된 조사실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칙을 무시한 채 조사실이 아닌 관구실과 공장 내에서 자술서와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이를 근거로 조사 수용시킨 일이 있었고, 조사 수용된 후에도 1주일이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던 예가 있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항의를 하였지만, 청송감호소에서는 이에 대한 제반 법규를 들며 적절한 처분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이 사회보호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보호감호소의 경우에도 그 운영실태가 교도소와 비교하여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교정 목적과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서로 다른 보호감호소와 교도소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소의 피보호감호자들을 마치 교도소 수감자들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사회보호법의 준용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피보호감호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회보호법의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고,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임에도 사회보호법은 그대로 행형법을 그대로 준용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사회보호법 제42조의 규정은 매우 포괄적인 위임으로 애매하고도 모호하여 위헌이라고 하겠습니까.

또한 사회보호법의 행형법 위 준용규정은 피보호감호자들의 가출소의 경우에 심사규정에 그대로 행형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제정된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의 경우 수행자분류처우규칙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등으로 피보호감호자들은 가출소를 바라보기 위하여 교도소보다 훨씬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서도 이를 참고 지내야만 하는 위헌적인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위헌 확인 청구의 적법성

가. 청구기간의 도과 여부

청구인의 이 사건 위헌 확인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소기간은 그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는 그 법률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법률(法律)이 공포(公布)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도록'하는 취지에 다른 기간 도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률공포 후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1990.6.25. 89헌마220)라고 밝히고, 위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제적 제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법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단지 법률의 공포만으로 제소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적용에 따른 구체적인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 것은 이 사건 문제 발생의 처음의 동기가 되었던 면담요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어도 2002. 11. 21. <면담장소를 계단 입구>로 하였을 경우로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렇게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제기(2003. 1. 20.)는 60일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보충성 원칙 해당성

청구인이 피보호감호자로서 받고 있는 헌법 침해는, 이 사건 행당 법률 조항의 행형법 준용규정으로 인하여 감호처분과 형벌의 구별 없이 행형법을 준용함과 그로 인하여 내부규정을 제정, 개정함으로써 인하여 청구인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는 다른 여타의 불복 방법은 없는 것이며-왜냐하면 이에 대하여는 이미 보호감호처분이 내려진 후이고, 내부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적법한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보호감호자가 이를 감호소 내부에서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이에 청구인으로서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위헌적(違憲的)인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가 위헌법률(違憲法律)에 기인한 것이라 인정하는 경우' 당해 법률조항(法律條項)에 대하여 위헌선언(違憲宣言)을 하여야 한다(1992. 1. 28. 91헌마111 참조)'고 판시하고,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동사거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쟁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권리가 구체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불구하고 구체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1997. 11. 27. 94헌마60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라고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도 특별한 행정구제의 절차가 없고,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사회보호법의 제42조의 위헌성에 대하여

가. 보호감호 제도와 형벌 제도의 차이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을 근거로 한 보안처분으로서, 그 본질과 추가하는 목적 및 기능에 있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인 처분으로(2001. 3. 21. 99헌마7 구국가보위입법회의법등위헌소원), 이는 형벌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보호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보호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중에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바로 보호감호와 형벌이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처분에 대하여 ‘그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형벌과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보호감호에 대하여 이중적인 처벌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 보호감호에 있어서 행형법 준용의 의미

헌법재판소의 견해도 형벌과 보호감호 처분이 다른 성격을 갖는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제반 적용 및 규정은 이러한 기본적인 성격의 차이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보호감호처분의 성격상 형벌과 동일하게 준용 적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성격상 배척되는 것은 분명히 가려내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구별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법률 적용은 애매하고 모호한 기준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보호법 상의 준용 규정을 살펴보면,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1) 사회보호법상에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 2) 성질에 반하는 경우는 행형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서는 않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형법은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미결수용자라 한다)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형벌의 집행에 관한 기초적인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형벌과 다른 법률적 성격을 갖는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인 피보호감호자가 형벌의 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행형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되고 이를 근거로 한 규정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면 이는 곧 형벌과 같은 것이라 하겠으며, 나아가 헌법의 이중처벌 금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보호법의 위 규정은 이와 같이 형벌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행형법의 준용에 있어서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기준에 의한 준용이 없이 막연하고 애매한 정도의 준용을 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 법 제42조의 위헌성에 대하여(명확성 원칙의 위반)

우리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하여 무한한 보장을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헌법입니다. 다만 기본권의 제한의 경우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히 헌법 제37조에는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기본권의 제한을 위한 법률은 이른바 법률로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법률의 경우는 위헌으로 그 효력이 배척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 그 법률은 일반성과 명확성을 갖추어야’ 하다고 정하고,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多義的)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고 판단하고 있어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기본권제한의 법률로 명확성의 원칙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인 사회보호법 제42조의 행형법 준용 규정을 살펴보면, 1) 우선 형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형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형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며, 2) 법적인 성격이 전혀 다른 보호감호처분과 형벌을 같은 성격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적

용 준용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일종의 기본권의 제한인 보호감호 처분의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서 집행자로 하여금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있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 하겠습니까.

따라서 기본권의 제한인 사회보호법의 준용 규정인 제42조의 준용 조항(특히 행형법의 준용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애매하고도 모호한 준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하겠습니까.

라. 침해의 구체적인 내용

위 위헌인 준용규정으로 청구인은,

1) 우리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의 형벌 행사로 인한 수형자도 아닌 피감호자인 청구인이 적법한 법률 근거도 없이 채소자와 같은 정도의 주거 환경과 작업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인간으로 기본적인 권리(접견, 교통, 서신 및 교환 등과 같은)를 제한 받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2) 또한 우리 헌법 제12조의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3) 그리고 우리 헌법 제13조의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으로 침해를 받고 있으며,

4) 보호감호자들은 행형법을 준용함으로써 인하여, 우리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권에도 수형자거나 일반인들에 비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하겠습니까.

5. 입법부작위에 의한 위헌

다시 한번 이 사건 조항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보호법 제42조 【다른 법률의 준용】은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구체적인 특별한 규정-즉 보호감호처분에 걸 맞는 제반 적용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재의 사회보호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입법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행형법 등에 준용 규정을 두고 있어 많은 하위법령들이 행형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모두 구체적인 입법의 부작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1999. 11. 25 98헌마456 포락토지불보상등위헌확인),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국가의 행위의무나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는 단지 위 애매하고도 모호한 준용 규정으로 모든 보호를 위한 입법을 마쳤다고 한다는 것은 명백한 입법부작위인 것으로 그 자체가 위헌인 것입니다.

6. 결 론

사회보호법은 그 태생부터 인권침해의 요인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 여러 계통에서 지적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단지 누적된 범법자들이고 상습적인 범법자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에 따른 형의 선고도 없이 이들을 사회와 격리시키고, 교화라는 명목으로 신체의 구금과 동일한 상황인 감호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피보호감호자는 감호시설의 수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에 따른 가출소처분을 받기 위하여 수형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아무런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억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우리 보호감호제도가 교화를 위주로 사회적응의 재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현실인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형법을 준용하는 사회보호법의 규정은 이미 법 규정 자체로 보호감호와 형벌의 차이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으며, 애매하고도 모호한 의미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한다는 불명확하고 다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한 위헌인 것이라 하겠습니까.

이상과 같이 사회보호법 제42조는 입법부작위에 따른 위헌인 조항이며, 애매하고도 모호한 준용 규정으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기본권 제한의 규정으로 역시 위헌인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위헌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3. 5. 27.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헌법재판소 제3지정 재판부 귀중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서번호 : 03-05-23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 목 :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집회 개최**
청송2감호소 단식농성 7일째 및 청와대 1인 시위 4일째

날 짜 : 2003년 5월 28일

유해정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019-307-4418

문 의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

0643/ 016-706-8105

박성희 02-763-2606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집회 개최 및 법무부 항의방문

1. 지난 23일 낮 12시부터 시작된 청송 제2감호소 피보호감호자분들의 단식농성이 오늘로 7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목요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2. 사회보호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와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 공동주관하는 이날 집회에는 청송보호감호소에 이 달 23일에 출소한 감호자를 비롯해 현재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출소 감호자분들이 함께 할 계획입니다.
3. 또한 집회에 앞서 민가협 회원들이 법무부를 항의 방문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현 청송보호감호소의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과 관련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4. 많은 기자분들의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공동위 참여단체>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다산인권운동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 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엠네스티 한국지부,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교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평등노조이주지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2003. 5. 22 현재)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서번호 : 03-05-29

수신 :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참조 : 유현 상임위원

발신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목 : 청송 제2 보호감호소 단식농성과 관련 면담 신청

날짜 : 2003년 5월 29일

문의 :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6-249-0083

1. 사회 정의와 인권 수호를 위해 애쓰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3일부터 7일째 진행되고 있는 청송 제2 보호감호소의 단식농성과 관련하여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과의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3. 현재 600명이 넘는 피보호감호자들이 단식에 동참하고 있고, 하루에도 몇 명씩 병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위원장님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계획을 면담을 통해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담요청일시 : 2003. 5. 30. 오전 11시

면담신청인 : 장유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송원찬(다산인권센터 소장) 등 6인

2003. 5. 26.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

2003. 5. 29.



법무부

공보관실 전화 02-503-7011, 팩스 02-504-5723

자료문의:보호국 보호과, 전화:503-7066, 주책임자:김현정 과장 담당자:이용주 검사

제목 : 「보호감호제도」 획기적으로 바꾼다

- 법무부 "보호감호 혁신 방안" 발표 -

- 법무부에서는 최근 우리사회의 인권의식이 크게 성장됨과 아울러 범죄에 대응하는 능력 또한 크게 강화되는 등 여러 환경여건의 변화를 감안 그간 위헌성 논란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보호감호제도"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호감호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현재 법무부가 마련한 「보호감호 혁신 방안」은 피보호감호자의 인권제약을 최소화하면서도 보호감호제도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보호감호 수용관리를 보호처분 주무부서인 보호국으로 이관

- 그 성격상 보호처분인 보호감호의 대상자 수용관리는 형벌집행 기관인 교정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가출소 심사 등을 결정하는 사회보호위원회는 보호국에서 운영하고 있어, 보호감호 정책·집행의 혼선을 초래하였음
- 이러한 이원적 관리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호감호시설의 수용관리를 보호처분 주무부서인 보호국으로 이관하면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복지분야의 전문인력도 확보하여 감호제도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게 제도를 운영할 예정임

2. 대도시 인근 지역에 보호감호시설 신설

- 보호감호 시설이 오지에 위치하고 있고 폐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회와의 단절이 심화되고 사회적응력도 약화되는 등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 공단 인근에 소규모 감호시설을 신설하여 교육 및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가능한 경우 외부 기업체 통근작업 등을 실시하는 개방적 처우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사회적응력을 배양할 계획임

3. 피보호감호자 처우의 획기적 개선

- 보호감호가 형집행과 유사한 격리수용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인권적 처우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고, 출소 후 사회적응에 필요한 생활 능력을 길러주는 부분도 소홀한 점이 있었음
- 이에 따라 피보호감호자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존의 처우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수용환경을 개선하고, 외부교통권 제한을 완화하며, 귀휴·사회견학 등 사회와의 접촉기회도 확대 실시 하겠음
- 또한 출소 후에 바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취업유망직종을 발굴하고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직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근로보상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외부기업체 통근으로 받은 보수를 적립하여 생활정착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음

4.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시스템 강화

- 피보호감호자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돌아갈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 취업도 쉽지 않아 출소후 1년 이내 재범율이 높을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 무연고자나 자립기반이 취약한 출소자에 대하여 숙식제공이나 직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소자 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사회복귀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 한국更生보호공단 등 출소자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한 사회적응을 지원할 예정임

5. 감호집행 기간의 단축 등 사회보호법 개정 추진

- 형벌집행후 별도로 집행되는 보호감호 기간의 상한이 지나치게 길어 형벌과의 균형이 문제되므로,
- 이를 해소하고 감호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호기간의 상한을 일부 단축하거나 법관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사회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6. 가출소 기회 대폭 확대

- 감호집행 기간 조정과 관련하여 사회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가출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가출소 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사회보호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임

■ 개선방안에 대한 법무부 주요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음

- '03. 6. 2. 법무부 정책위원회 안전 상정
- '03. 6. 중 보호국·교정국 공동 「보호감호 혁신 추진기획단」 구성
- '03. 6~8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관련기관 의견조회등 여론 수렴후 법무부(안) 최종 확정

■ 법무부는 동 혁신 방안의 추진이 인력과 시설의 확충을 필요로 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피보호감호자 처우관련 규정의 개정, 근로보상금 인상 추진, 가출소 확대 등 현 상태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현재 수용중인 대상지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임

법무부 개선안을 비판한다

“그들은 우리를 버리지않겠고 대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20여명쯤 죽어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지 않을까요? 용기를 내어 분명한 경식을 얻을 때까지, 이번 기회가 아니면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고언아래 죽을 때까지, 기운이 남아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사회보호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한다. 얼마나 자유가 그리우면 검토에 불과한 대안 제시 뉴스만을 대하고도 기뻐했겠는가? 법무부가 직접 나서서 폐지를 주장할 정치적 입장이 아니거나 용기가 없다면 감호자의 가족들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감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할 때다. 책상 위의 보호감호가 아닌 현실 속의 보호감호를 감호자만큼, 그의 가족들만큼, 공대위만큼 잘 아는 사람이나 단체가 또 어디 있던 말인가?

그런데 법무부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단식투쟁과 600여명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2감호소는 애써 외면하고 1감호소만을 방문하여 ‘교화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내보면서 감호자의 목소리를 들은 양 ‘개선방안’을 공공연히 유포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그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법무부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기만술에 불과하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죽어가는 감호자와 그의 자식들, 남편과 아내들, 늙으신 부모님들의 피명을 가슴에 안티플라민만을 발라주고 다시 짓밟는 행위에 다름없다.

감호소를 둘러싼 하얀 담장의 문양만을 보지말고 법무부장관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높은 콘크리트 담안의 진정한 아비규환의 현장을 직접보고 들어라. 그나마 법무부 장관의 눈과 귀가 가려져 있다고 믿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믿기 때문인데 만약 그분이 비겁해서 2감호소를 피해갔다면 그분의 지금까지 인권을 위해 싸워온 치적에 큼 흠이 될 것이다.

장막을 걷고 현실을 보라.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과감히 고쳐라. 절차가 필요한 부분만을 구실로 내세우지 말고 절차와 예산의 장애가 없는 부분부터 과감히 고치는 것이 잘못을 시인하는 올바른 태도이자 유일한 방법이다.

29일 발표한 법무부의 개혁안 발표는 지금까지 감호자가 다 알고 있던 내용에 불과하다. 그것인 개혁안이 아니라 이미 사회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다. 우유를 사이다 병에 옮겨 놓고 사이다라고 우기다가 다시 콜라병에 옮겨 담아놓고 콜라라고 우기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감호자는 감호자 한사람이 아니다. 가족의 일원이고 사회의 일원이다.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주길 피눈물로 호소한다.

2003년 5월 30일

피보호감호자 대표단 일동

법무부의 '보호감호 혁신 방안'에 대한 반박 성명서
: 참여정부는 보호감호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청송의 문을 열라

청송 제2보호감호소의 피감호자 550여명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일주일째 접어든 즈음 법무부는 소위 '보호감호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법무부의 방안은 근본적으로 보호감호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반인권성을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는 이에 대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혁신방안'이라고 명명한 이 방안이 "피보호감호자의 인권제약을 최소화하면서도 보호감호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에게 매우 모호한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잣대를 들이 밀어 자유를 박탈하고 장기 간 일정시설에 구금해 사회부터 격리시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보호감호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인권침해는 결코 사라질 수 없다. 따라서 보호감호제도의 존치를 전제로 한 이번 방안은 법무부가 피보호감호자의 인권은 물론 국민의 인권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없이 국민을 기망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법무부의 발표한 방안의 실효성 역시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법무부는 대도시 공단 인근에 소규모 감호시설을 신설, 피감호자에 대한 교육 및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개방처우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그들의 사회응용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넘비현상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교도소를 신설하지 못하여 과밀 수용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법무부가 대도시 공단 인근에 감호시설을 신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사 법무부가 수백억의 예산을 투자해 도시 공단 인근에 감호시설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격리 그 자체가 반인권적임으로 폐지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비판 받는 보호감호제도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 것으로 사회경제적으로 크나큰 낭비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러한 예산이 있다면 교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인 과밀 수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갱생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수용자들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다음으로, 법무부는 '피보호감호자 처우의 획기적 개선'이라고 하면서, 수용환경을 개선하고 외부교통권 제한을 완화하며, 귀휴·사회견학 등 사회와의 접촉 기회도 확대 실시하고 출소자 사회 복귀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외부교통권 제한 완화나 귀휴·사회견학 등 사회와의 접촉 기회 확대는, 당연히 시행해야 할 것들을 이제와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법무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가출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보호위원회에 가출소 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법무부도 인정

하였듯이, 현재 보호감호는 그 기간이 길어 형벌과 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피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력도 약화시켜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광범위한 가출소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198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독일 나찌 정권때 제정된 법률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보호감호제도, 신군부의 핵심들은 쿠데타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를 옹호하기 위해 만든 보호감호제도는 가장 대표적인 반인권 제도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 정부의 법무부 역시 이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 의식 없이 청송보호감호소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개탄스러운 일은 사회보호법의 문제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송감호소 단식농성과 관련해 책임지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측 역시 매우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23년 인권침해의 대명사로 악명을 떨친 사회보호법과 청송감호소 문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침묵하고 국회가 눈을 감는 것은 인권기구로서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를 바라며,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위하여 조속히 정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는 사사로운 바람이 아닌 시대와 역사적 책무이며, 만약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계속 외면한다면 국가인권위와 국회는 준엄한 역사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우리는 경고하는 바이다.

26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보호법에 의한 피감호자들의 인권침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모아 법무부의 '보호감호 혁신 방안'이 기만적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보호감호제도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한다.
"참여정부와 국가인권위, 국회는 보호감호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청송의 문을 열라"

2003. 5. 30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법무부 반박방안
030529.06



大韓辯護士協會

자 료 문 서 의	담당부서	담당과	법무과
		담당이사	인권이사 박영립 변호사
		담당자	법무과장 허정
		전화번호	법무과 02)3476-4003
	공보이사	도두형 변호사	

성명서

- 청송보호감호소 단식투쟁, 언제까지 정부는 보고만 있을 것인가 -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는 오늘(31일, 토),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의 단식투쟁과 관련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 폐지 △ 보호감호제도 폐지 이전이라도 가출소의 대폭 확대 및 근로보상금 인상 등을 포함한 처우개선 즉각 실시 △ 청송보호감호소와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을 위하여 국회는 국정조사권 발동 △ 헌법재판소는 그동안의 합헌결정에 종지부를 찍고 피감호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 것 등을 촉구함.

■ 붙임 : 성명서 1부(2매)

<끝>

성명서

- 청송보호감호소 단식투쟁, 언제까지 정부는 보고만 있을 것인가 -

청송보호감호소의 피감호자들이 지난 5월 23일부터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단식투쟁이 아직도 우리들의 기억에 생생한데 왜 이들은 이 같은 극한적인 투쟁을 또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법무부는 지난해, 피보호감호자들이 세 차례에 걸친 단식투쟁을 통해 주장한 보호감호제도의 폐지와 가출소 확대, 처우 개선 등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인권유린 상황을 방치하였다. 결국 피보호감호자들은 다시 한번 사회보호법의 존재, 곧 보호감호제도 그 자체의 폐지를 위해 다시 한번 죽음을 무릅쓴 처절한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보호감호제도는 지난 80년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한 다음 폭력배 소탕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끌고가 인권을 유린한 삼청교육대의 후신이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반인권적 제도임을 우리는 안다. 이 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형벌을 다 마친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격리시켜 이들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중차별이다. 또한 보호감호제도는 이 사회 빈곤계층의 범 죄를 구조화하여 범 죄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오히려 사회를 파괴하는 제도이다.

본형과 보호감호를 합쳐 최하 7-8년을 교도소와 감호소에서 복역함에도 그들이 출소할 때 가지고 나오는 돈이 고작 기십만원이고, 장기간의 수용생활로 가족이 모두 파괴되어 갈 곳이 없으며, 제대로 된 직업교육이나 학과교육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에 대해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들이 재범의 유혹없이 이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제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청송보호감호소의 외마디 비명을 들어야 한다. 이 나라의

인권발전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청송의 보호감호시설을 없애고 다시는 사회보호라는 이름 하에 자행되는 이중처벌을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줄 때, 그리고 그 희망이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될 때, 우리 사회가 진정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금번의 청송보호감호소의 단식 투쟁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보호감호제도의 폐지 이전이라도 가출소의 대폭 확대, 근로보상금의 인상 등을 포함한 처우 개선을 즉각적으로 실시하라.

셋째, 국회는 청송보호감호소와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라.

넷째,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의 합헌결정에 중지부를 찍고 피감호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2003년 5월 31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재승

진정서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호소하는)

진정인 : 조석영

취재 청송제2보호감호소에 죄보호감호자로 수용 중

주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우체국 사서함 3호

수용번호: 259번

진정대상: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차장

— 인사 말씀 —

이 진정서는 현재의 보호감독이 새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감호자들의 꿈을 좌절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일 뿐 저희 감호자들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며, 과오에 대한 반성과 철저한 참회로 이 진정서를 드린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보호법 제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호자들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여기고, 그 것밖하고 있는 인간을 구제해 주시고자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면에는 저희들이 '각각 진정한 사회의 일원으로 각자 태어나 사회에 보탬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자정도 코심 줄 압니다. 사회보호법이 제지된다고 해서 모든 감호자들이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장담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이 제지된다면 대다수의 감호자들은 저희들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여러분의 정성과 열정에 감사하며 정말 열심히 살아갈 것이고 감호자의 자존심·자신을 모두 한결 같이 기뻐할 것입니다. 특히 일부에 한하여 각자 범죄를 저지를 위협이 현재는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보호법이 제지되면 일부의 이런 위협상마저도 완전히 해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고 굳게 믿으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호자들에 대한 여러 자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듯이 대부분 수년

종의 초저학력자가 대부분인 감호자들은 보호감독의 제해와 인권침해 실상을 있는 대로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 진정서도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고 있으므로 눈과 머리로 이 진정서를 읽지 마시고 마음의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서론 —

보호감독은 '죄를 범하여 그 형을 종료한 자를 보호하여 교육·개선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7년동안 보호감독하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사회보호법의 보호감독이 제5공화국이 삼정교육대의 악랄한 인권침해 실상이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급조된 법이라는 점과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권침해의 논란이 그치지 않을 만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보호감독은 악법인 사회보호법에 명시된 "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에 의한 사회보호"의 수단을 전혀 감호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감호자의 사회복귀를 방해하고 사회를 보호하기는커녕 사회를 파괴하는 법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감호자 뿐 아니라 그 가족과 친지는 물론 자신들의 인권침해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보호감독에 대한 논란의 초점은 보호감독이 '형벌'이냐 아니냐, 즉 감호자가 교도소의 수형자(受刑者)와 똑 같은 처우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였습니 다. 교도소와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다면 분명히 형벌이고 이 중의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호감호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시설과 생활이 교도소의 특장다.

감호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지인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3면이 깎아지른 절벽과 강으로 둘러싸인 오지와 같은 '옥지의 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범위가 크고 시설과 장비가 삼엄한 구금시설단지 내에 위치한 초중구금(超重拘禁)시설입니다.

시설의 모양은 물론 배치까지도 초중구금교도소인 같은 단지 내에 있는 청송교도소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건축과 시설·준수사항·일과종류 시간표가 교도소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행형법·수형자분류처우칙 및 교정관계법령 또는 교정관행에 따른다고 법과 정책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작동하는 감시카메라 아래에서 교도관의 근접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는 것은 물론 무섭이 경각에 걸린 죄자라도 교도관의 동행 계호가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 의·식·주(衣·食·住)도 교도소의 특장다.

침구와 옷도 교도소의 수형자와 똑 같고 (의보호감호차분류처우칙 제46조) 수형석 또는 살로 갖는 밤이나 한 끼에 400원 정도 하는 부식으로 교도소의 특장입니다. (음 식 제45조) 교도소와 똑같은 2.5형의 마루로 된 거실에서 침구

와 의류·생활기구·의사 등을 정리하고 같은 공간에서 거동하는 동료의 체온에 의지하여 추위를 달래고 여름에는 동료의 체온을 증오하면서 사후되는 죄지처럼 5~6명이 북적거리며 생활합니다.

대소변을 보는 화장실에서 성것이를 하고 일년에 한 번 침구를 세탁하는 등 위생 악기는 2야말로 사치일 뿐입니다.

○ 근로와 직업훈련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감호자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의보호감호차분류처우칙> 제70조 2항에는 '감호자의 근로의욕을 촉진시키고 직업상 유용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송 제1, 2 보호감호소의 작업은 <종이 소량백에 끈 끼어 접기>와 <비닐 위생장갑 개수 세어서 담기> 뿐입니다.

이것이 과연 근로의욕을 촉진시키고 직업상 유용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단 말입니다.

직업훈련 종류로 사회에서 기능으로서의 효능을 다할 수 있는 지극히 낙후된 기능(조적·타일·전구무승·이음·자등차 렌탈 정비 등)을 뿐입니다. 훈련 공과 명칭만 보면 그럴듯한 <정보기기응용> 등과도 있습니만 죄머도 사회보다 5년 이상 뒤떨어진 직업훈련입니다. 또 자격증 취득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직업훈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근로의 대가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근로보상금이 20% 인상된 2003년 1월 현재 3개 취업장의 87명의 간호사는 한달에 1인당 평균 46,731원의 근로보상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하루에 1인당 평균 1,869원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한달을 25일로 기준) 결국 이것은 생활비와 의약품·진료비·전화비·신문구독료 등 거의 모든 생활을 자비(自費)로 해결해야 하는 간호사들의 생활비 비용에도 못 미치는 돈인데 어찌 저축을 통한 사회복지 자금을 저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국가에 의한 간호사의 노동력 착취입니다.

2002년 10월 31일 현재 전체 간호사의 총근로보상금저축액을 보면 1인당 평균 390,606원을 저축하고 있고, 이 평균금액을 벌드는 간호사가 69.94%, 10만원 미만을 저축한 사람이 37.6%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나 저소득층에서 등으로부터 근로보상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송금받아 사용하고 있어서 24마 이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는 저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취업을 할때야 취업 자리가 부족한 여자간호사의 경우는 훨씬 심각합니다.

○근로보상금 등급의 최상

사회에 알려지기는 2003년 1월부터 간호사의 근로보상금이 20% 인상이 되어 하루에 일인당 최소 1,400원에서 최고 5,800원까지 근로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상에 불과합니다. 근로보상금은 근로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근로등급은 보호감호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승급이 쉽습니다. 결국 보호감호를 오래 받

여해야 근로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하등급인 1등급의 경우 (1,400원) 1,400원의 근로보상금을 받으려면 1일 기준 정량을 모두 채워야 하는데 노약자·장애자는 물론 건강하고 능력 있는 간호사도 전화·진료·운동·증교집회 등 공제되는 시간이 많아서 1일 기준량을 채우지 못하여 하루에 1,4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간호사도 많습니다. 실제로 2003년 1월 <중이 소청백 접기> 취업장의 간호사 55명 중 하루에 1,400원 미만의 근로보상금을 받는 간호사가 23명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 4월 27일 현재 전체 808명의 간호사 중 취업 중인 약 610명의 간호사 중 근로등급 5등급~7등급 사이의 간호사가 391명(64%), 2등급 이상은 11%에 불과하였고 (66명) 모두 5년 이상을 복역한 간호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로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간호사도 140여명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2간호사는 평균 3년 이상 복역하였는데 이런 실정이니 1간호사의 경우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형편없는 의료시설과 서비스

의료시설이 낙후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출퇴근하는 응급보건의 1명당 일주일에 1회 씩 출근하는 의무과장이 청진기 한 번 대보지 않고 오로지 환자의 증상 설명에 의지하여 처방을 할 뿐입니다. 조금만 진료 비용의 소모가 예상되면 외부 병원에 자비(自費) 치료를 받으라고 강권하고 있고, 응급 질환의 경우로 자비 외부진료를 가려는 절차를 밟는데

환상 이상이 경리는 전 예사고 외부병원에 진료를 위해 호송을 할 때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두 개씩 채우고 조승으로 꼼꼼 묶어 고관의 1인당 2명씩 권총과 가스총을 휴대하고 근접 계호하며, 잇몸수술과 같은 수술을 할 때는 환 쪽 손목의 수갑조차 풀어주지 않습니다. (꼼꼼 묶인 그대로 2시간 이상 잇몸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이 꼬박꼬박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죄와 살 같은 돈을 지급하고 받는 의무 진료자 마치 고분과 같습니다.

○ 재사회화 교육이 전무(全無)하다.

교육이라고는 고르스와 똑같은 '정신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처럼 정신적인 시간 때문기에 불과하고 2주간의 정신교육 기간의 30% 정도를 <정보화교육>이랍시고 컴퓨터 교육실에 앉혀두고 강사 한 사람 없이 장담코끼리 터음듯 컴퓨터를 만져보는 것 외에는 재사회화교육은 일체 없습니다. 더불어 일반 고르스에서는 시행된지 20년이 지난 외부 통근 직업이나 개발형 처우·사회복지훈련을 위한 사회 적응 생활관 운영 등 사회 친화적인 교육프로그램은 한 칸 가지도 없으며 <외부감호자 분류처우계획>에 명시된 재사회화 처우조차 일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가정과의 및 가족친지·지인들과의 단절

감호자는 대부분 주변층의 무학자 또는 저교육자들입니다. 때문에 가정의 감

호자의 장기구금으로 인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감호자의 처가 자식을 쫓겨내고 가족을 하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의 파괴되고 자녀들은 탈선으로 내몰아 장래에 잠재적인 범죄자 양산의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감호소가 위치적으로 오지언테라가 장기 구금으로 인하여 가족친지·지인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감호소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 감호소내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이나 교구를 위한 교재·의약품 구입을 위한 경제적인 조급의 요청이나 진료비 등의 연속적 장기적 부담으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져서 출소 후 재사회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보호감호소는 범죄 양성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감호자를 사회로 갑자기 내몰아 살기 위해 과거의 범죄를 반복하여 감호소로 되돌아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다할 기능과 기술도 익히지 못하고 직업상 유능한 지식이나 경험을 축적하기는커녕 가지고 있던 기능과 경험도 장기구금으로 잃어버린 채 짧게는 7년 길게는 20년만에 갑자기 사회로 내몰린 가출수자는 감호소가 워낙 저무늬므로 과거의 범죄는 반복하지 않지만 숙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수갑 카트랑(법 신용카드 할인)·자음차나 전자제품 할부 구입 후 전매·투거나 투전 또는 로박 현상메시의 기생·노숙자로의 전락 등 수 없이 많은 또 다른 범죄를 양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 반사회화에 길들여진다.

물과 전기·시설물 등에 대한 자발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에너지와 자원 절약 의식이 없어도, 잘 다룬 주부식과 저급한 관급물품의 자급은 결국 대량음식쓰레기 배출과 절약 정신의 결여를 초래하여 현대사회의 필요불가결한 의식인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근검 절약 정신을 해치게 합니다. 또 등작시간과 근로 일과가 교차관의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져 있어서 일반사회의 생활인과는 동떨어진 생활리듬에 길들여지게 하여 출근 후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 여자 감호소에 대한 처우는 최악

여자 감호소는 직원식당과 피용 직업훈련을 제외하고는 근로나 직업훈련이 전혀 없어 단순히 감방에 가두어 두는데 그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옥시 위의 섬'이라는 청송감호소 내에서도 완전히 격리 폐쇄된 사동(舍棟)에 위치하고 있어서 절해고도에 유배된 것이나 견배가 없습니다.

○ 흉악범 교도소라는 오해는 국가와 언론의 흐트러짐

감호소가 '흉악범교도소'라는 오해는 군사정권의 흐트러짐에 의한 것이고 2001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전체 감호소의 92.8% 이상이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거나 단순 폭력사범에 불과하며 흉악범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미 10년 이상 복역 생활을 한 교도관으로 과거의 흉악범이었

을 뿐입니다.

○ 가족친지 및 지인들이 강하는 인권침해

감호소가 '흉악범 교도소'라는 국민들의 오해로 인해 이웃과 지역주민으로부터 흉악범의 가족으로 손가락질 받기 일쑤고, 가족들을 위해서는 취업보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타인에게 취업보증서류를 부탁해야 하므로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또 가족들을 위한 환경교사와 가족소 후의 보호관찰, 관할 경찰서의 주시와 순찰 등은 감호소의 가족을 압박하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감호소가 오지 중의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선로한 부모와 직장인·생활인인 가족친지 및 지인들, 학생인 자녀들의 면회권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도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감호소는 근본적으로 재사회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접촉을 해야만 사회복귀가 촉진될 것 아니겠습니까.

○ 감호소가 강하는 인권침해

서신의 검열과 전화의 감청, 수시로 실시되는 사물(私物)의 검색과 하루도 거르지 않는 몸수색 등은 이제 만성화된 인권침해의 일부분입니다. 가족소가 대부분의 감호소의 가족소들을 위해서는 환경교사와 함께 신원보증서와 취업보증서를 필수 구비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실질적인 무면교사가 대부분의 감호소들은 부득이 타인에게 자신이 전과자인 감호소임을 밝히고 환경교사와 신원·취업 보증을 부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또 가출수 후에는 전과자라는 '사생활의 비밀'이 응수연기 드러나 있으므로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여지가 많고, 언제까지 가출수가 취소될 수 있라는 중압감 때문에 취업현장에서 부당한 요구에도 응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당한 처우가 불만으로 축적되어 우발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결국은 취업현장 이탈을 초래하여 급기야 다시 갇혀보통수의 수용소나 기타 가출수자 수용소라는 제3의 구금시설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3중 처벌을 넘어 4중 처벌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 보호감호는 법치국가의 수치

보호감호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보호감호 처분을 선고하므로 이중처벌·과잉처벌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짧게는 2년 길게는 20년의 징역형을 복역하면서 교정교화된 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경 선고 감시에 미리 예단을 하여 선고를 하므로서 자의적 판단의 금지·예단적 판단의 금지의 원칙을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형법정주의(量刑法定主義)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등 법치의 근간(根幹)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명·죄질에 따라 이미 가출수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징역형 선고와 동시에 재범의 위험성 해소 여부와는 전혀 상관 없이 보호감호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는 분명히 이중처벌입니다.

2003년 5월 1일 대통령 지명 국가인권위원으로 임명된 이종욱 변호사는 "형벌 이외에 보호감호를 적용하고 있는 사회보호법은 국가보안법보다 더 야만적인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이런 법률들이 존재할 만큼 인권에 있어서는 후진적인 나라에서 인권위원직을 맡게 된 것이 부끄러운 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의 현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 보호감호는 법률적으로도 형벌

사회보호법 42조에는 감호자를 '행형법'을 준용하여 처우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보호감호자 분류처우규칙'에도 모든 처우를 수형자와 똑같이 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또 사회보호법 38조에는 보호감호 기간 중에 금고·징역형을 복역할 때와 똑같은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어서 금고형이나 징역형과 보호감호가 똑같은 것을 법 자체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호감호는 실형과 마찬가지로 선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 보호감호는 교도소의 교정(矯正) 행정을 부정한다.

교도소 수형 중 아무런 모범적인 생활을 한 모범수라고 해도 보호감호수로 옮겨오는 그 순간에 '개선 가능성이 없는' 질 나쁜 감호자로 행정상 전락해 버립니다. 실제로 감사자인 감호자가 아무런 모범적인 감호수 생활을 계속 하면서 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교도소에서 교정교화된 감호자로 행정도 일순
간에 부정되어 버립니다.

○ 보호관찰은 3중 형벌

본래 보호관찰은 법의 선처를 받은 소년범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의 관찰과 사회적응 지도가 근본적인 목적이자 취지였습니다.

감호소를 출소하는 자는 모두 가출소자로 매월 1회이상 보호관찰소에 출
석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갑자기 사회로 내놓려 하루하루 밖
살기에도 버거운 가출소자들을 보호관찰소로 출석하게 하는 것도 성
업에는 방해 요인이고 수시로 전화 등에 의한 확인은 주위로부터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보호관찰소에 출석 신고는 동병상련의 입장에 있는 가출소자들을
정기적으로 접촉하게 하여 신세 전환에 이은 비관적 관념으로 흐르게
할 위험을 상당부분 내포하고 있고, 징역형을 복역하고 난 후에
징역형보다 급절의 보호감호를 복역하고 다시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은 분명 3중 처벌입니다. 보호관찰도 근본은 법에 의해 가해자
경벌의 선처 또는 형벌적 의미를 지닌 지도관찰이 아닙니다.

○ 검찰수사에서의 악몽

지능적이거나 치부한 범죄자들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호감호
청구 자체를 방어할 수 있지만 구빈층 클수록이 대부분인 감호자

는 이런 적극적인 자기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로부터 "보호감호
를 청구하겠나"는 말 한 마디는 어떤 고문(拷問)보다 무서운 협박이며 "보
호감호를 청구하지 않을테니 시인하라"는 말은 어떤 술수보다 악랄한 자백
의 강요입니다.

○ 보호감호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사회보호법이 제정된지 23년이 다 된 오늘날까지 흉악하고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른 감호소 가출소자는 순가적으로 끝을 정으로 적었던
반면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날이 갈수록 늘
어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보호감호가 감호자의 사회복귀를 전혀 촉진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범죄를 방지하여 사회를 보호하지도 못한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호감호는 완전히 실패했고 존
재할 가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입법부는 각성해야 하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지금 법무부는 보호감호제도가 감호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고 있고 감호자 뿐 아니라 감호자의 가족친지·지인들의 인권바
지도 침해하는 반인권적 악법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선례 등을 통
해 구구한 해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 감호자들에게는 여러번 2003
년 4월달 가출소부터는 새로운 내부 규정이 적용되므로 가출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4월말 가톨릭사의 현황을 지켜본 결과 전체 가톨릭 인원은
변함이 없고 수용 기관은 오히려 증가 하며 또한 가톨릭 집사들의
가톨릭 인원을 늘이므로써 감호자들에게 대한 법무부와 감호소장의
향력을 높여 감호자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
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잘못의 시인은 말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반드시 잘못을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보호감호제도를 연구 검토하여 개정된 후에 그 개정된 법과 제
에 따라 시정해 나가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면서 감호자를 압박하고 (가
톨릭에 적극적 개입 등)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자는 시정술책에 불과
합니다. 진정한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그 법을 고치기 전에 그 법

의 태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구제를 먼저 시행하여야 하
고 예산의 현상이나 법적·행정적 제한이 없는 가톨릭의 적극적 확대
나 기류·외부 선학 등 감호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법무부는 밥그릇 싸움에 매달려 진정한 개혁의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이 저희 감호자들을 분노케 합니다.

—결 론—

이 진정서를 쓰면서 한(恨)이 있었지만 역시 보호감호의 현실을 있
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글로 다 표현하지 못했다는 점과 이 진정서를

읽으실 분들의 지루해하실 것을 염려하여 자세하게 모두 쓰지 못했
다는 점입니다.

몇 달 며칠을 애기해도 다 못할 사정을 아찌 몇 장의 글 속에
다 적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자
세하게 적은 내용을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는 전과자인 저희 감호자들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누구보
라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참회로 국가와 사회와 국
민 여러분들께 사회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감호자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정말 사람답게 살아보는 것입니
다.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지난 잘못이 못
마땅하다라도 앞으로는 새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
요. 희망과 용기를 주십시오.

보호감호가 감호자의 재사회화에 눈썹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모든
감호자들이 이토록 애절하게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찬 부스리로 호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 감호자들만 보시지 마시고 저희들의 부모형제와 처자식을 생각해
주십시오. 감호소에 갇혀있는 자식의 손이라도 한 번 잡아보고 주
고 싶어 하시는 감호자들의 끊임없는 부르짖음과 가정(家長)을 대신하

여 리는들로 망부(望夫)의 환을 갈래며 가정은 지키려고 애쓰는 아내들과
아빠·엄마가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손 끝아 기다리며 눈물로 기
드리는 어린 자식들을 뽀뽀하며 여기저기 사회보호법이 제지될 수 있으
록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빌려 눈물로 호소합니다.

○ 인천운동 하루소식지에 게재된 내용에 대한 의견

사회보호법 제지를 위한 공중대책위원회의 사무국인 인천운동사랑방에서 <인
천운동 하루소식지>를 통하여 6회 선재물로 게재된 사회보호법 관련 기사
를 읽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사회보호법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다루어 준 것인데 선재물이 아니었다 싶습니다. 1회부터 5회까지는
보고 매번 후 후 후 후 읽었고 마침 6회분은 보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흥록 변호사님께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직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으로 기
록해 주신 것만으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고해주신 유해성, 김보영, 이혜영, 고근배, 배경내님과 인천운동
사랑방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전문가들께서 깊이 있게 연구하시어 쓰신 글을 두고 잡지 재가 부
담이 가다부터 드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줄 압니다만 수정과 3급 차
가 있는 부분이나 법무부의 자료 등의 잘못을 지적할 부분이 가끔 눈에
띄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책자 제작도 계획하고 계시는
말씀을 들었기에 후속 작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잘못 알려주
는 안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시리즈 ②권 감호자의 학력 부분에 대하여

초중이 40.3%, 중중이 25.4% 등이라고 했는데 실제 학력과 지적인
성적 수준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칩니다.

우선 감호자 자신이 못 배운 것이 부끄러워서 학력을 부풀리는 경
우도 많고, 무엇보다도 초중·중중·고중의 학력도 청송교도소나 1, 2

감호소 또는 보호감호를 부여하기 전에 다른 교도소나 소년원에서 정
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점성교시를 통해 취득한 학력이 상
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성교시에 의한 학력도 대부분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학력이라고는 드려볼 수 없습니다.
또, 실사 학교교육에 의한 학력이라고 하더라도 가정환경에 의해서

양사자의 잘못 때문이든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마친 정상적인 학력이라고
는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
니다.

이런 점은 저의 '호소문'과 '질의서' 등에도 자세히 언급하였지만 지
점 볼 수 있을 때만이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리즈 ③권 감호소 작업 부분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업은 3가지가 아니라 거실 작업으로 실시되는 <위
생비밀 장갑 개수 세척 소강화기> 작업에 종사하는 감호자가 약 40여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중이 소강화기 손잡이 용 끈 끼어 잡기> 작업 뿐입니다.

그러니까 종무 수는 2종류이고 1, 2 감호소를 통틀어서 <중이 소강화기
잡기>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3가지 종류라고 한

자료는 1999년도 경의 자료가 아님이 합니다.

직업훈련 부분에 대하여

"고르판이 가져다주는 도면은 칼칼칼 외우고 가면 대부분 합격한다"고 출소자의 말을 인용하셨는데, 도면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고르판이 아니라 직업훈련교사일 것입니다.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되는 것은 몇 가지 유형의 실기시험 문제가 반복해서 수십년 동안 출제되기 때문에 실기시험 재료 준비 부족만 보일 어떤 문제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고, 직업훈련 공과가 외곽 모래밭에다가 낙후된 기층의 뜻에 관련 기능교사에 종사하는 직업훈련교사가 극히 일부이므로 극소수의 직업훈련교사가 거의 이 없이 같은 감호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감독기관 또한 고려하여 부정적 상호협력의 나타나지 않거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례(實例)가 있습니다만 이 전경서에서의 언급은 적절치 않고 방송도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 점으로 고쳐드립니다만 이러한 부정행위는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부정행위 근절을 가르쳐야 할 감호소에서

러 부정행위를 방조 내지는 종조하거나 협력하여 윤리의식을 타박시키는 행위로서 감호자의 직무를 과감히 드러내는 현이 있더라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진정한 재사회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격증 합격률 등을 내세워 관련 직업훈련교사나 감람 공무원의 근무 고가 심적을 평가하고 공치사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가 막힐 것입니다.

근로보상금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 4쪽 하단에서 부터 6쪽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언급은 역시 이 전경서에서는 적절치 못한 듯하여 차후에 자세히 언급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보상금의 지급이 미비하거나 이를 데 없고 근로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근로등급의 미상과 하루에 1400원에서 5800원까지 근로보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소할 때 쓰지하고 가가는 돈(근로보상금)의 액수에 대해서

2002. 10. 31. 현재 100만원 이상을 저축한 감호자는 약 11.3%에 불과하였고, 감호소 주에서 평균 40만원에도 못 미치는 돈을 가지고 출소한다고 밝혔으므로 "출소할 때 주머니에 큰 돈은 채 100만원도 못 된다"고 하신 부분은 다소 과장이 되었다고 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검정·확사고시 합격은 다른 부문에 대하여

검정·확사고시에 지원이나 채택이 없는 것은 분명하나 검정·확사고시의 합격이 가톨릭 심사에 반영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갑종수준에서 말하거는 자격증과 검정·확사고시에 합격하거나 토창을 받은 갑종자는 가톨릭 심사에서 우선한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갑종자를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므로 하고, 작업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여 미취업 상태로 갑종자들을 단순 구급하여 주는 것에 대한 책임 회피용으로 갑종자를 취득시키는 갑선이설일 뿐입니다.

만약 확사고시 합격이 가톨릭의 채택을 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나 사회보호위원회가 밝혔다면 저는 큰 불이익을 받은 셈이므로 그 자리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는 확사고시반에서 8개월 동안 5회 합격 공부하였는데도 부당한 방법으로 확사고시 응시를 방해 받았으며 불이익 중에서도 큰 불이익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갑종수장 토창 8회, 지방고정정장 토창 1회, 한문 1급 자격증 시험 성적 우수 토창 (전국 16등), 대통령기 특시경진대회 경북에서 수상 등 11회의 토창을 받았고, 한문 4, 3, 2, 1급 자격증, 외국어고시 2급 자격증, 정보기기응용 기사 자격증, 일본어 능력 2급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경비는 한 한 번도 없었는데 보호감독 초범 (정리)으로 4회차(4회) 가톨릭 심사에서 가톨릭이 불려되었습니다. 일본어 능력 자격증은 제가 처음이고 한문 1급 성적 우수상도 제가 처음이었으나 보법이 될 만도 없었는데 불려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회보호법 제지를 위한 투쟁을 하기 전의 토창과 자격증이고 정보기기응용 기사와 일본어 능력시험, 대통령기 특시경진대회 토창은 2 후의 일인데 그러는 법무부의 '복'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않는 않습니다. 충분히 감수할 수도 있고 걱정잡이나 심심찮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아닌 어느 누구라도 먼저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고 법의 제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기때 했거니와 제가 갑종수 안에서 할 역할이 많이 남았다는 하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하면 오히려 책임감으로 힘과 용기가 솟습니다.

시리즈 ④편 '행정법을 준용한다'는 부분은

<외보호갑종자 분류처우규칙> 100조에 '행정법, 등 시행령, 수행자 분류처우규칙 및 분류업무지침 등 고령관계 법령 또는 고령 관계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규칙에서 대부분 수행자 관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령 관계에 따른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종기 부문에 대하여

선종기는 현재 자치사증인 5사증 하종과 중종에만 설치되어 있고 5사증 상종을 비롯한 다른 거실에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2반급 거처생활 기반 시설이나 재사회화·친사회화 시설의 설치

등 사회복지 촉진을 위한 조치는 오히려 일반 교직원보다 훨씬 늦게, 그러니까 전국의 교정관련 수용시설 중 맨 마지막으로야 차례가 돌아오는 실정입니다.

접견 부분에 대하여

접견장에 아크릴 칸이 완전히 가로막고 있지는 않고 제한 시간은 30분인데 대략 10~20분 정도의 접견이 허용됩니다.

접견장이 한 호실 뿐인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외국 전국 각지로부터 먼 거리에 있어서 서비스 오는 좌우 2백이거나 접견이면 이들이 걸릴 칸이 감호자의 거주권지 및 지인들이 쉽게 접견을 할 업주를 내기 어려운 탓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애초부터 '사회로부터 완전한 격리'라는 노선 군사정권의 의도였을 것입니다.

키류 부분에 대하여

키류 기간은 대개 최고 4박 5일이고, '행형법의 키류를 가족의 사망, 회갑 등과 같은 경조사' 등의 경우에는 2배 차이가 있습니다. 행형법의 적용을 받는 '키류 시행 규칙'에는 가족 모두가 해감되는 것이 아니고 직계 존비속의 사망·결혼·회갑 등에만 키류 해감 사항이 된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형제자매의 경우는 '방계'라는 이유로 키류 해감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활해야 한다는 원칙이 없더라도 말이 되겠습니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검정·확사고사반을 운영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 해소를 위한 보호감호소의 교육·개선 제도라는 것인데 그 과정을 우수하게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해도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법무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교육반·확사반·직업훈련에 지원하는 것이 가중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지원 하는 것은 할 수, 일을 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권을 증진·인권옹호의 열정적인 노력과 귀한 글에 실일이 주저함은 드물 활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회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 석함을 감감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글로나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003. 5.

정승제 2보호감호소 2보호감호자 조

위 손도장은 본인의 손도장을 증명합니다.

이 오 함

사회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키류

保護監護行政革新方案 檢討(案)

2003. 5.

法 務 部

目 次

I. 檢討背景	1
II. 現實態 與 問題點	1
III. 保護監護行政革新方案	3
1. 基本方向	3
2. 監護期間의 合理的 調整	4
3. 監護所 施設 · 運營의 劃期的 改善	5

保護監護行政 革新方案 檢討(案)

I. 檢討背景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민변·참여연대 등 인권단체가 사회보호법 폐지 및 보호감호 집행과정의 위헌성 주장
- 보호감호소의 수용·관리·처우에 대한 피보호감호자들의 헌법소원 및 청원 급증
- 피보호감호자들의 처우를 인권적·개방적으로 개선하여 원만한 사회복귀 촉진으로 위헌론 불식 필요

II. 現實態 및 問題點

- 집행기간의 장기화로 이중처벌 위헌성 시비
 - 병과된 형기보다 감호집행이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 이중처벌이라는 불만을 야기
- 형벌과 감호집행의 차별화 실패로 감호제도 효용성 격감
 - 피보호감호자들을 중구금시설에 수용, 행형법의 지배 아래 수용위주로 폐쇄적 운영
 - 감호집행 방법상의 독자성 미흡으로 형벌과 구분되는 보호감호제도 존재 가치에 대한 회의감 발생

중구금 시설 격리수용으로 자립기반 및 사회적응력 약화

- 오지에 위치한 중구금시설이 수용, 의무통근취업과 같은 개방적 처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 단순 직종의 훈련과 작업으로 출소후 취업연계 곤란
- 근로보상금이 적어 자립기반 조성이 한계
 - * 제2감호소 가출소자 가출소시 평균 잔여액 496,180원 불과하는 등 과소한 근로보상금 문제로 12년도에 4차례 집단 불식시위 발생
- 장기수용 피보호감호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가출소자 전담 사회복지지원 시스템" 부재
- 사회적응 곤란으로 높은 재범을 발생
 - * 년도별 재범률 지속적 상승 추세, 재범자의 54.5%가 1년 이내 재범
- 보호감호 행정 및 법제의 이중성으로 수용관리에 혼선 야기
 - 사회보호위원회 운영은 보호국에서, 수용관리는 교정국에서 담당하는 등 감호행정의 이중성으로 정책의 일관성 결여
 - 피보호감호자 수용관리에 행형법을 준용하여 이중처벌 논란 발생 여지, 헌법소원 제기 등 법령 정비 시급

Ⅲ. 保護監護行政 革新 方案

1. 基本方向

감호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인권적 감호행정 구현

□ 사회복지법 개정

- ▶ 보호감호 집행기간 제한규정 신설
- ▶ 본인 가출소심사 신청제도 신설

개방형 감호소 운영으로 사회적응능력 극대화

- 1] 개방형 감호소 신설
- 2] 법제 및 인력의 일원화·전문화
- 3] 사회진화적 저우 실시
- 4] 맞춤형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

2. 監護期間의 合理的 調整

가. 필요성

- 현행 보호감호 기간은 지나치게 장기이므로 이를 편측시켜 위험론 불식
- 가출소 신청심사 권한이 없는 피보호감호자들에게 심사신청권을 부여하고 궁극적 사고방식을 갖도록 유도

나. 추진내용

□ 보호감호 집행기간 제한규정 신설

- 병과된 형기의 범위 내에서 감호집행토록 기간 제한
 - '징역 3년 및 보호감호'가 선고된 경우 감호집행 상한기간이 형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 * 2000년 3월 동일 내용으로 사회복지법 개정 추진 후, 8월 법률안을 법제처에 제출하였으나, 동년 9월 자제입법계획을 철회 재추진 검토 필요
 - * 외국 입법례를 찾아 그 밖의 개선방안도 검토 필요

□ 피보호감호자 심사신청제도 도입 검토

- 가출소 허가 심사 회부 여부를 피보호감호자 본인이 직접 사회복지위원회에 심사신청하는 제도 도입 필요
 - 현행 직권심사는 집행개시후 1년단위로 이뤄지고 있으나, 본인 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심사기회 확대